



2018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이번 호에는 정부부처가 2018년에 시행할 예정인 239건의 달라지는 주요제도 중 여성·가족 관련 일부 내용을 담았습니다.

아래는 여성·가족 관련 21가지 중 6가지 주요제도입니다. 보다 상세한 다른 부처·분야별 주요제도는

기획재정부에서 발간한『2018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책자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01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종합서비스(영상삭제 등) 개시

- 추진배경 디지털 성범죄는 증가하고 있는데 반해, 범죄 특성을 고려한 피해자 지원이 미흡해 삭제·지원 등 피해자 지원 필요
- 주요내용
 - ① ‘여성긴급전화 1366’을 디지털 성범죄 피해창구(gateway)로 운영
 - ② 경찰 신고에 필요한 채증 및 긴급 삭제 지원
 - ③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연계 및 사후 모니터링 실시
 - ④ 전문적인 상담, 의료비, 무료법률서비스 등 지원
- 참고: 지원문의·여성긴급전화(1366)
- 시행일 2018년 상반기
- 시행기관 여성가족부 권익정책과



02 ‘경력단절여성 취업정보서비스’ 본격 운영

- 추진배경 경력단절여성 취업지원서비스 제고로 여성고용 확대
- 주요내용
 - ① 직업교육훈련 신청: 새일센터에서 운영하는 각종 직업교육훈련 과정을 온라인을 통해서도 교육 신청이 가능하도록 개편
 - 개편 전: 직업교육훈련 센터 방문 신청 → 개편 후: 온라인 교육 신청
 - ② 인턴 온라인 접수: 인턴 채용 절차 등 관련 정보는 항상 온라인을 통해 공개하고 신청자를 오프라인과 병행하여 접수
 - ③ 구직자 이력관리시스템 구축: 구직자의 직업교육훈련, 인턴십, 취업연계 정보 등의 정보를 한번에 확인할 수 있도록 구현
 - ④ 일자리정보 공개: 워크넷 일자리 정보 등을 공개하는 ‘일자리 정보코너’ 개설
- 참고: 여성가족부 홈페이지>뉴스·소식>보도자료>새일센터 취업정보서비스 오픈
- 시행일 2018년 1월
- 시행기관 여성가족부 경력단절여성지원과



03 출산 전·후 휴가급여 상한액(150→160만원) 인상

- 추진배경 '18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출산전후휴가급여 상한액 인상
- 주요내용 출산전후휴가, 유산·사산휴가를 사용한 근로자에게 휴가 시작일을 기준으로 산정한 월 통상임금 100%을 휴가기간(90일)에 대하여 지원(상한 월 150만원, 하한 최저임금)
- * 대규모기업의 경우 휴가기간 중 60일을 초과한 일수만 지급
- 참고: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 정보공개 > 법령정보 > 입법·행정예고 > 출산전후휴가급여상한액인상고시안
- 시행일 2018년 1월 1일
- 시행기관 고용노동부 여성고용정책과



04 보육료 9.6% 인상으로 보육료 지원 강화

- 추진배경 최저임금 인상, 표준보육비용 등을 고려한 보육료 지원 강화
- 주요내용
 - ① 모든 어린이집에 공동으로 지원하는 부모보육료 2.6% 인상
 - ② 민간·가정어린이집 등 정부인건비 미지원시설에 지원하는 기본보육료 21.8% 인상
 - ③ '18년 1월부터 보육료 인상으로= 어린이집 안정적 운영 지원
- 시행일: 2018년 1월
- 시행기관: 보건복지부 보육사업기획과



05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 지원 수준 (통상임금 60→80%) 인상

- 추진배경 일·가정 양립 및 '10 to 4' 더불어 돌봄실현을 위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인상
- 주요내용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를 둔 근로자가 육아휴직 대신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한 경우, 임금감소분을 고용보험에서 지원
- 참고: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 정보공개 > 법령정보 > 입법·행정예고 >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안 참고
- 시행일 2018년 1월 1일
- 시행기관 고용노동부 여성고용정책과



06 근로청소년 현장도우미 지원 확대인상

- 추진배경 청소년이 근로현장에서 부당한 처우를 받았을 때 현장도우미가 현장을 방문하여 중재하는 등 청소년 근로권익 보호 지원
- 주요내용
 - ① 지원대상: 근로기준법상 근로(아르바이트)가 허용되는 청소년(13세~19세) 청소년 기본법상 청소년 9세~24세
 - ② 지원내용
 - 사업주와의 현장면담을 통한 청소년 근로권익 침해·부당처우 확인해결, 경찰·노동관서를 연계한 사건 처리 등
 - 근로청소년 기관 및 시설 등을 연계하여 근로청소년의 여건에 맞는 종합적인 지원(건강·진로·학업복귀·직업 등) 실시
 - ③ 이용방법: 청소년전화(1388) 및 문자상담(#1388) 청소년근로보호센터(02-6677-1429)를 통한 상담 및 지원
- 시행일 2018년 1월
- 시행기관 여성가족부 청소년보호환경과



2018년 달라지는 여성·가족 관련 제도

달라지는 주요 제도	내용
간이한 친생추정 배제절차 마련	① 어머니 또는 전남편이 가정법원에 비송절차인 '친생부인의허가청구'를 통해 전남편의 자녀가 아님을 증명하여 자녀를 출생신고할 수 있음 ② 생부가 가정법원에 비송절차인 '인지의 허가 청구'를 통해 자신의 자녀임을 증명하여 자녀의 출생신고를 직접 할 수 있음
믿고 맡길 수 있는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국공립 450개소 확충(신축·공동주택리모델링·민간장기임차)
지자체가 설치·운영하는 산후조리원 설치기준 완화	지자체가 설치·운영하는 산후조리원 입지관련 설치기준 완화 ※「모자보건법 시행령」개정 및 관련「고시」폐지 추진 중
위기청소년 맞춤형 지원 확대	① 지역사회청소년통합지원체계(CYS-Net) 운영 지역 확대(224개→226개) ② 청소년동반자 확대(1,146명→1,261명) ③ 청소년쉼터 확대(123개→130개) ④ 찾아가는 거리상담 전담요원 확충(30명→60명) 지원문의: 위기청소년 지원 및 상담 전화 ☎(지역번호)1388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운영기관 확대	방과후아카데미 운영기관 확대(250개소→260개소) 지원문의: 방과후아카데미 홈페이지(www.youth.go.kr/yaca), 방과후아카데미 운영지원단(02-330-2831~4)
청소년 수련시설 종합 안전점검 분야 확대	청소년수련시설 종합 안전점검 분야 확대(6개분야→6개분야+위생)
학교 밖 청소년 지원시설 확대	① 꿈드림센터 확충(202개소→206개소) ② 자립역량강화프로그램 운영 센터 추가(7개소→8개소) 지원문의: 꿈드림 홈페이지(www.kdream.or.kr), 청소년 전화(1388)
여성폭력 피해자 지원시설 확대	① 폭력피해여성 주거지원 시설 확대(295호→315호) ② 폭력피해 이주여성 쉼터 확충(26개소→28개소) ③ 성매매피해아동·청소년 지원센터 운영(7개소 신규 지정·운영) 지원문의: 여성긴급전화(1366)
여성고위공무원단·여성임원 목표제 도입	① 실질적인 의사결정권한을 가진 고위공무원단의 여성 비율을 높이기 위해 「여성 고위공무원단 목표제」를 최초로 도입하고 여성 비율을('17년) 6.1% → ('22년) 10%로 확대 ② 공공기관의 성 평등한 의사결정을 위하여 「여성 임원 목표제」를 최초 도입하고 여성 임원 비율을('17년) 11.8% → ('22년) 20%로 확대 하여 OECD 평균(20.5%) 수준 달성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생활안정지원 확대	① 월지원금 확대('17년 월 1,298천원 → '18년 월 1,337천원) ② 간병비 확대('17년 월 평균 1,087천원 → '18년 월 평균 1,120천원) ③ 건강치료비 확대('17년 월 평균 390천원 → '18년 월 평균 780천원)
공동육아나눔터 운영 지역 확대	공동육아나눔터 운영 지역 확대('17년 66개 지역 → '18년 113개 지역) 이용문의: 건강가정지원센터 홈페이지(www.familynet.or.kr.) ☎1577-9337
취약·위기가족 서비스 지원 강화	① (지원대상) 중위소득 72% 이하 한부모·조손가족 등 취약가족, 재난·사고 등을 경험한 긴급위기가족 ② (지원내용) 사례관리, 가족상담, 긴급가족돌봄, 학습·정서지원 등을 기본사업으로 하고, 외부자원연계를 통해 사업의 효율성 제고 ③ (수행기관) 61개소 건가·다가 통합서비스 운영기관 및 건강가정지원센터 등 이용문의: 건강가정지원센터 홈페이지(www.familynet.or.kr.) ☎1577-9337
한부모(미혼모·부포함)가족 아동양육비 인상	①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단가 인상 및 지원연령 확대 *('17년) 월 12만원 → ('18년) 월 13만원 *('17년) 만 13세 미만 → ('18년) 만 14세 미만 ② 청소년한부모 아동양육비 지원단가 인상 *('17년) 월 17만원 → ('18년) 월 18만원 문의: 한부모상담전화 1644-6621, 거주지 주민센터 신청: 거주지 주민센터 방문 신청 또는 복지로 홈페이지(www.bokjiro.go.kr)
아이돌봄 지원사업 정부지원 확대	① 시간제정부지원시간(가형~다형): ('17) 연 480시간 → ('18) 연 600시간 ② 시간제·영아종일제정부지원비율(가형~다형): ('18) 소득계층별 5%p상향 ※ 시간당 이용단가(돌봄수당): ('17) 6,500원 → ('18) 7,800원 * 아이돌봄 서비스: 맞벌이 등으로 양육공백이 발생한 만 12세 이하 아동의 가정으로 아이돌보미가 찾아가는 돌봄 서비스 지원문의: 아이돌봄 홈페이지(http://idolbom.go.kr) ☎ 1577-2514
미성년 자녀 정보이용료 알리미 서비스 전면 실시	① (문자발송 기준금액) 3천원, 5천원, 1만원, 1만5천원, 2만원, 2만5천원, 3만원, 4만원, 5만원, 6만원, 8만원, 10만원 ② (문자발송 내용) 010-XXXXX-XXXXX 님이 사용하신 정보이용료가 00원을 초과하였습니다 ※ 상기 기준금액을 넘을 때마다 휴대폰 명의자와 부모 휴대폰에 문자가 전송됨

2018



대전시정 2018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대전시는 매년 시민들에게 새롭게 도입되는 제도와 시책, 법률개정 등에 대한 정보를 담아 발간하고 있는데, 여기서는 '아동수당 지급' 과 '저소득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인상'제도를 소개합니다. 보다 상세한 다른 제도는 대전시에서 발간한 『2018년 대전시정 이렇게 달라집니다』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01 아동수당 지급

사업개요

- **지급대상** | 2인가구이상 기준 소득수준 90%¹⁾ 이하 만 0~5세²⁾ 아동
- **지급금액** | 월 10만원
- **지급방식** | 현금지급 원칙
- **신청자** | (신청) 아동 보호자³⁾ 또는 대리인

1) 별도 연구·조사를 통해 제도 시행 전 구체적 기준 확정

2) 6세 생일 전월까지 최대 72개월

3) 친권자, 후견인, 그 밖에 아동을 실제로 보호하고 있는 사람

*** 아동수당이란? 2인가구 이상 기준 소득수준 90% 이하 만 0~5세 아동을 대상으로 2018년 9월부터 매월 10만원 지급하는 수당

신청방법

주소지 동 주민센터 방문 또는 온라인 (PC, 스마트폰) 신청

시행일 | 2018년 9월



02 저소득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인상

무엇이 달라지나요?

구분	종전	변경
아동양육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원연령 만 13세 미만 • 지원단가 월 12만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원연령 만 14세 미만 • 지원단가 월 13만원

신청방법

- **신청기관** | 주소지 동 주민센터
- **신청서류** |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제공 신청서,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등

사업개요

- **지원대상** | 18세 미만(취학시 만 22세 미만) 자녀를 양육하는 소득 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52% 이하 한부모·조손가족
- **지원내용**

시행일 | 2018년 1월

*** 저소득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이란? 저소득 한부모 가족(조손가족 포함)의 가족기능 강화, 생활안정 도모, 복지증진을 위해 아동양육비, 학용품비 등을 지원하는 제도

구분	지원조건	지원내용
아동양육비	저소득 한부모가족의 14세미만 아동	자녀 1인당 월 13만원
추가양육비	저소득 조손가족 및 25세 이상 미혼 한부모 가족의 5세이하 아동	자녀 1인당 월 5만원
학용품비	저소득 한부모가족의 중학생 및 고등학생자녀	자녀 1인당 연 5.41만원
생활보조금	한부모가족 복지시설에 입소한 저소득 한부모 가구	가구당 월 5만원

